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11일, 배준영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배준영의원)

현행법은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출자·출연기관(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 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던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이 수반되어 왔음. 그러나 여전히 지방에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여 청년 유출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지방공기업의 사업과 설비에 대한 투자 역시 부족한 상황이어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방공사가 그 설립목적과 직접 관계되는 사업(이하 “목적사업”이라 함)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있으며,

주택사업 또는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

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 내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함)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음(제1항).

또한, 지방공단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제2항),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일괄적으로 3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지방공사 등이 주로 수도·하수도·지방도로·주택사업 등 공익적 성격이 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사무를 대행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지방공사 등의 업무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이나,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례의 효과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지방공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특례의 일몰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하여야 할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